

제 12 장 전기통신

제1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인증 설비라 함은 당사국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접속을 위해 승인된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를 말한다.

적합성평가 절차라 함은 제9.1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적합성평가 절차”를 말하며, 부속서 12.1에서 규정된 절차들을 포함한다.

부가통신 서비스라 함은 컴퓨터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 가. 고객의 전송정보의 형식, 내용, 코드, 프로토콜 또는 이와 유사한 측면에 작용,
- 나. 고객에게 추가적, 차별적 또는 재구성된 정보를 제공, 또는
- 다. 고객이 저장된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

사내 통신이라 함은 회사가 행하는 다음과 같은 전기통신을 말한다.

- 가. 회사 내부적인 통신 또는 각 당사국이 정의하는 바의 자회사, 지사, 계열회사와의 통신 또는 이들 상호간의 통신, 또는
 - 나. 회사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이고 회사와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인들과의 비영리적 통신,
- 다만, 위에 나열한 인들을 제외한 인과의 전기통신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독점사업자라 함은 당사국 영역내의 관련 시장에서, 컨소시엄이나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단독 공급자로 지정되거나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는 실체를 말한다.

망 중단점이라 함은 고객의 구내에 존재하는 공중전기통신망의 최종경계를 말한다.

비차별적이라 함은 동일한 환경하에서 동일한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또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사용자, 고객 또는 잠재적 사용자나 고객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를 말한다.

자가망이라 함은 사내 통신용으로 또는 지정된 인물간에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

프로토콜이라 함은 신호 및/또는 자료정보의 전송의 목적상 두 주체간의 정보교환을 규율하는 일련의 규칙 및 형식을 말한다.

공중전기통신망이라 함은 규정된 망 종단점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공중전기통신기반을 말한다.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라 함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서비스라 함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하며, 이에선 전신,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며, 전형적으로 2개 이상의 지점간에 고객이 전달하는 정보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화없이 실시간 전송한다.

표준이라 함은 상품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 또는 서비스나 관련 운영방법 등에 대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규칙, 지침 또는 특성에 대해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구가 승인하고 그에 대한 준수가 의무적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이나 운영방법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기술 규정이라 함은 상품의 특성이나 이에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 또는 서비스의 특성이나 이에 관련된 운영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문서로서 적용가능한 행정 규정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준수가 의무적인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이나 운영방법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

전기통신서비스라 함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하나,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케이블, 방송 또는 그 밖의 전자기적으로 배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말 장치라 함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신호를 처리, 수신, 교환, 발신 또는 송신할 수 있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장치로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종단점에서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12.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타방 당사국의 인이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로서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의 접속 및 사용을 포함,
- 나.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타방 당사국의 인이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다. 공중전기통신망에 단말기나 그 밖의 설비를 접속하는 것에 관련된 표준관련 조치.¹⁾

2. 이 장은, 방송국과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가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전기통신망이나 전기통신서비스를 설립, 구축, 획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인가하도록 요구하는 것,
- 나.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전기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설립, 구축, 획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하도록 일방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어떤 인이 이와 같이 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 다.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이 자신의 망을 이용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방 당사국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또는
- 라.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종사하는 인에게 케이블 또는 방송 설비를 공중전기통신망으로서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을 일방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12.3조 공중전기통신망과 서비스에의 접속과 사용

1.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

1)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지 않는 설비나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는 설비에 관해서는 당사국은 제9장의 표준관련 규정에 따른다.

국의 인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에 따라, 개인 임차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공중 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2. 제6항과 제7항의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다음을 허용할 것을 보장한다.

- 가. 공중전기통신망과 접속하는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의 구입이나 임대, 그리고 접속,
- 나. 고객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화접속 및 이들로부터의 전화접속을 제공하는 용도로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개인임차나 자가망과 그 당사국의 영역내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는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상호접속, 또는 그러한 인들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임차하거나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 접속,
- 다.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 그리고
- 라. 그들이 선택한 운영 프로토콜의 사용.

3. 각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설정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이 사내전용 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해 그리고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나 그 밖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위해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제20.1조에 부가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전송내용의 안전과 비밀의 보장, 또는
- 나.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가입자들의 사생활 보호.

6. 제12.5조의 내용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외에는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과 사용에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특히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망이나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공중에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의 확보, 또는
- 나.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7.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대한 조건들이 제6항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그러한 조건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나 공동사용에 대한 규제,
- 나.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상호접속을 위해, 접속 프로토콜을 포함한 특정 기술 접속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다. 개인임차나 개인소유 회선과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와의 상호 접속, 또는 다른 인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규제, 그리고
- 라. 채택되거나 유지될 경우 절차가 투명하고 그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

제12.4조 부가통신 서비스의 제공 조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자국이 부가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그 절차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리고,
- 나. 위의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재정적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거나 신청자의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가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표준 또는 기술 규정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제한된다.

2. 어느 당사국도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
- 나. 비용에 맞는 요금 산정,
- 다. 요금 신고,
- 라. 그러한 서비스 망과 특정 고객이나 망과의 상호접속, 또는
- 마.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상호접속 이외의 상호접속을 위해,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의 준수.

3. 제2항 다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대해 요금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 가. 특정 사례를 통해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반경쟁적이라고 판명된 사업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그 사업자, 또는
- 나. 제12.5조가 적용되는 독점사업자.

제12.5조 표준관련 조치

1. 기술적무역장벽에관한협정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위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조치를 포함하여,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망 접속과 관련된 표준관련 조치를 다음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

- 가. 공중전기통신망의 기술적 손상 예방,
- 나. 공중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간섭 또는 동 서비스의 질 저하 예방,
- 다. 전자기 주파수의 다른 사용과의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고 호환성을 확보,
- 라. 요금 산정 설비의 오작동 예방,
- 마. 사용자의 안전과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속 보장,
- 바. 통신장비의 전기 안전성 보장, 또는
- 사.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 촉진.

2. 당사국은 승인되지 않은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가 시판되기 전에 공중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의 기준은 제1항에 합치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공중전기통신망의 망 종단점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의되도록 보장한다.

4. 어느 당사국도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장치로서 기능하는 인증된 장비의 고객측에 연결된 장비에 대해 별도의 승인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5. 기술적무역장벽에관한협정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자국의 적합성평가 절차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그 절차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한다.
- 나.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이 적합성 평가 절차에서 요구되는, 공중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시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당사국은 그 시험 결과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검토의 권한을 보유한다. 그리고
- 다. 특정인이 전기통신 장비의 공급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적합성 평가 관계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비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한다.

6.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로서,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시험기관이나 시험설비에서의 시험이 자국의 표준관련 조치와 절차에 합치하게 수행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수락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한다.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시험기관의 상호 인정 및 시험 보고서의 상호 수락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관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신장비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약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고려한다.

7.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기통신표준위원회를 설립한다.

8.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부속서 12.5.8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12.6조 독점사업자

1. 일방 당사국이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독점사업자를 유지하거나 지정하고, 그 독점사업자가 부가통신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전기통신관련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계열사를 통해 경쟁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독점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든 지사들을 통해서든 타방 당사국 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반경쟁적 행위에는 상호보조금 지급, 약탈적 행위 그리고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접속 공급에 있어서의 차별이 포함된다.

2. 제1항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실효성있는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 회계 요건,

나. 구조적 분리를 위한 요건,

다. 독점사업자가 그 자신이나 계열사들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그 경쟁사업자가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칙, 그리고

라. 공중전기통신망과 그 접속방식의 기술적 변화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보장하는 규칙.

제12.7조 투명성

제17.3조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조치를 공개한다.

- 가.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 나.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 다. 이러한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 라.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 마.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제12.8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이 배치되는 경우, 배치되는 한도내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12.9조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전세계적 양립성 및 호환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장려하기로 약속한다.

제12.10조 기술 협력 및 그 밖의 협의

1. 상호 호환성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기반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양 당사국은 기술 정보의 교환, 정부간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의 관련 활동에 있어서 협력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당사국은 기존의 교환 프로그램을 특별한 중점을 둔다.

2. 양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서비스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실현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한다.

부속서 12.1 적합성평가 절차

칠레의 경우

1. 적합성평가 절차의 채택에 대한 주무기관은 교통통신부 전기통신차관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2.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가. 법 제18168호 일반통신법(1982.10.2. 관보)
 - 나. 교통통신부령 제220호(1981.1.8. 관보), 그리고
 - 다. 교통통신부령 제220호 전화설비규칙(1981.1.8. 관보)

한국의 경우

1. 적합성평가 절차의 채택에 대한 주무기관은 정보통신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2. 현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승인 분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82호, 1997.2.22),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정보통신부령 제64호, 1999.2.26) - 형식승인품목, 적용 및 과정 절차에 관한 정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58호, 1998. 12.1)
단말장치 기술규칙(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8호, 1998.2.21) - 단말기설치 장치의 기술규칙에 관한 정의.
 - 나. 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분야
전파법(법률 제6315호, 2000.12.29),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58호, 1999. 3. 3.),
전파법시행규칙(정보통신부령 제53호, 1998. 7. 31.),
무선설비형식검정및등록규칙(정보통신부령 제52호, 1998. 7. 16.)
- 검정이나 등록의 대상, 적용 및 과정 절차에 관한 정의,
무선설비규칙(정보통신부령 제45호, 1998. 7. 31.)
- 기술표준에 관한 정의,
 - 다. 전자파 적합 등록 분야
전파법(법률 제5637호, 1999. 1. 18.),
전자파적합등록규칙(정보통신부령 제39호, 1997. 5. 8.) - 등록 목록, 적용 및 과정 절차, 그리고 관련 기술규정에 관한 정의.

부속서 12.5.8.
전기통신표준위원회

1. 제12.5조 제7항에 따라 설립되는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제12장에서 정의된 인증 장비에 관한 양 당사국의 표준관련 조치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양립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일정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개발한다.
3.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전기통신 장비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적절한 표준관련 사항들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항들을 다룰 수 있다.
4. 전기통신표준위원회는 다른 회의체에서 양 당사국이 수행하는 관련 활동과 비정부간 표준설정기구들의 관련 활동을 고려한다.